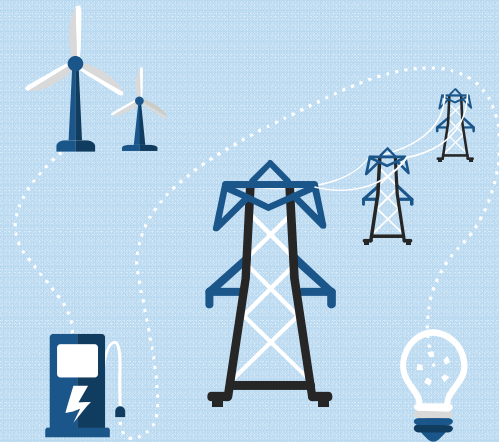




#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

2021. 6

한국전력공사



# CONTENTS

- I RE100 개요
- II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

# I RE100 개요

# 1 RE100 개요

## 01 RE100 개요

- ◆ 2014년 CDP 위원회, Climate Group 주도로 시작된 캠페인으로, 연 100GWh 이상 전력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 사용량의 100%를 재생에너지로 대체 추진
  - 권고안 : 2030 60% → 2040 90% → 2050 100%
- ◆ 현재 애플, 구글, BMW 등 309개 글로벌 기업이 CDP 위원회에 공식 등록하여 캠페인 참여 중
  - 참여기업수 : 2017 87 → 2018 155 → 2019 211 → 2020 309
  - 재생에너지 사용량 : 2017 72TWh → 2019 87TWh → 2020 113TWh

## 02 국내 RE100 이행수단

기업이 RE100 이행수단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구매 또는 사용한 실적은 에너지공단이 확인서 발급을 통해 인정



## 2 국내 RE100 도입 현황

<p><b>녹색 프리미엄제</b> 1</p>	<p>상반기 입찰 시행('21.1), 하반기 입찰 준비 중('21.6~7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전이 전기요금에 녹색프리미엄을 부과하여 재생에너지를 판매</li> <li>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 발전원가, 현행 전기요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한가 설정</li> <li>녹색프리미엄 판매 재원은 에너지공단에 전달하여 재생에너지 재투자에 활용</li> </ul>	
<p><b>제3자간 전력거래계약</b> 2</p>	<p>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정 중('21.6~7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주요 계약 내용 합의 후, 전기판매사업자(한전)와 양 당사자간 각각의 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를 사용</li> <li>발전사업자 ↔ 한전, 한전 ↔ 전기소비자간 각각 계약 체결</li> </ul>	
<p><b>인증서 (REC) 구매</b> 3</p>	<p>시범사업 완료('21.5), 제도 시행 준비 중('21.7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인 REC(신재생 공급인증서)를 직접 구매</li> <li>에너지공단이 개설하는 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가 자유롭게 거래</li> </ul>	
<p><b>지분 투자</b> 4</p>	<p>'21년 하반기 시행 준비 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하고, 투자한 비중만큼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</li> </ul>	
<p><b>자가 발전</b> 5</p>	<p>즉시 활용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,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</li> </ul>	

제3자간 전력거래계약

# II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

# 1 관련 법령

전기  
사업법  
제31조  
제1항

## ⊕ 제31조(전력거래) 제1항

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

전기  
사업법  
시행령  
제19조  
제1항  
제3호  
신설

## 3자(재생e 발전사-판매사업자-사용자)간 계약에 의한 도매시장 외 전력거래 허용 (시행령 개정 공포 ('21.1.12))

⊕ 제19조(전력시장외 전력거래) 제1항 제3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·재생 에너지발전사업자(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)가 1천킬로와트 초과 **의 발전설비용량(둘 이상의 신·재생 에너지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발전설비용량은 합산한다)**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**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고,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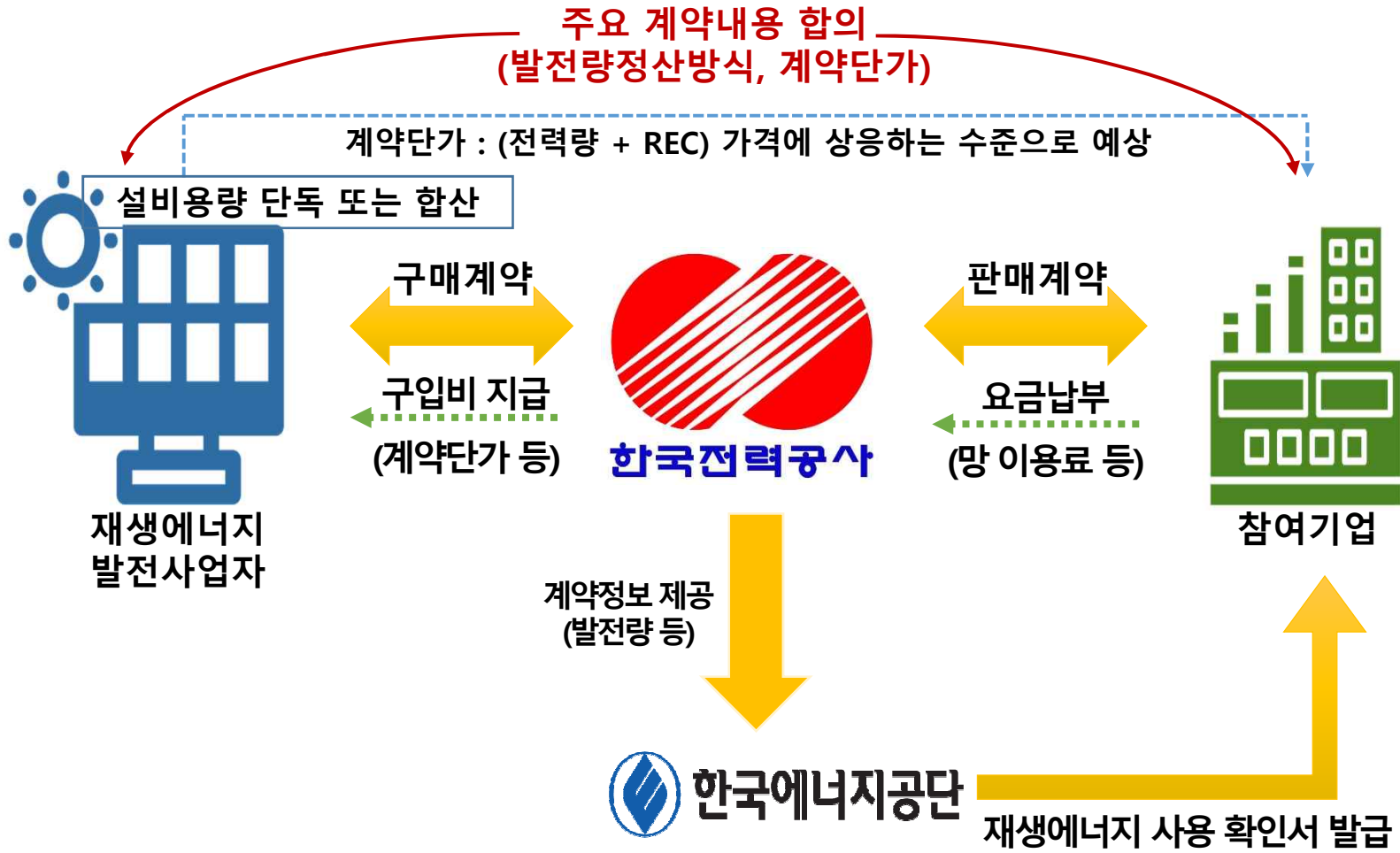
신·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(산업부 고시) 제정 중

## 2 개요 (산업부 고시)

개 념	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– 한전, 한전 – 참여기업간 계약
구 분	주 요 내 용
참 여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발전사업자) 설비용량 1MW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</li> <li>▪ (참여기업) 계약전력 1MW 초과인 고객 [일반용(을), 산업용(을)]</li> </ul>
계약가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발전사업자와 참여기업간에 합의한 가격</li> </ul>
계약물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발전량 전량 구매 (특정 시간대만 구매 및 판매하는 것은 불가)</li> </ul>
발 전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CDP 에서 인정하는 발전원 (태양광, 풍력, 수력, 지열, 바이오, 해양)</li> </ul>
계약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참여자간 협상 가능하며, 최소 기간은 1년</li> </ul>
판 매 사 역 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재생에너지사업자와 참여기업 각각과 전력거래계약 체결, 망 서비스 제공 및 그에 따른 요금 부과</li> <li>▪ 해당 거래의 보완공급 및 최종공급의무 담당 및 그에 따른 요금 부과</li> </ul>



# 3 거래 절차도



제3자 REC 발급에 관한 규정  
: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

요금 : 한전으로부터 받는 전기에 대한 요금  
+ 제3자간 계약에 따른 요금

## 4 참여기업(전기사용자) 요금의 산정 (지침 제18조)

구 분	주 요 내 용
계약가격 (제1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제6조에 따른 양 당사자간 합의 가격</li> </ul>
망 요금 (제2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에서 정한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적용 단가는 위 규정 별표1에서 확인 가능</li> <li>- 망 요금은 Peak와 사용량에 따라 산정되므로 각 전기사용자별 금액 상이</li> </ul> </li> <li>※ 망 요금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부 R&amp;D 과제 진행 중 (과제명 : 효율적인 전력설비 투자 유도를 위한 송배전망 이용요금 규제방식 연구, '20.11~'21.10)</li> </ul>
망 손실비용 (제3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한국전력통계(국가통계자료)의 손실률을 반영한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각 전기사용자별 접속 선로(송전/배전/송배전)에 따라 금액 상이</li> </ul> </li> </ul>
부가정산금 (제4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산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한 금액</li> <li>※ 전력거래소는 3자, 기업 PPA 등 장외거래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(과제명 :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PPA 구매자의 전력거래기준 및 정산 체계 연구, '21.4~'22.1)</li> </ul>
거래수수료 (제5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제3자간 전력거래와 관련한 검침, 요금 청구 등 3자 업무에 소요된 비용 (원/건)</li> </ul>
복지특례비용 (제6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정책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 금액 및 특정산업분야 지원금액으로 모든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</li> </ul>

## 5 거래 플랫폼 (구축 중)

발전사업자와 참여기업간 원활한 접촉을 위한 거래 플랫폼(7월 중 오픈 예정, <https://en-ter.co.kr>)

✓ 주요 기능 : 발전사업자, 참여기업 기본 정보 등록(위치, 설비용량, 전기사용량 등),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지침 별지1호 서식에 따른 합의서 작성, 계약체결 후 발전량, 요금계산 내역 확인 등

✓ '22년 이후에는 발전사업자-한전, 한전-참여기업간 전자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발 예정

**에너지마켓 플레이스**

- 01 에너지 신사업  
에너지사업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및 수익 창출
- 02 에너지 데이터  
에너지 데이터 공유 및 서비스 개발
- 03 신재생 에너지 PPA  
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 거래 가능
- 04 고객편의 서비스  
생활 속 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

- 01 한전과 전력거래 계약(PPA)  
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하는 제도입니다.
- 02 녹색프리미엄  
재생에너지 전기를 소비하고 이를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전기사용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.
- 03 제3자간 전력거래 계약  
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, 소비자(참여기업)간 계약입니다.
- 04 신재생 에너지 거래정보  
SMP, REC 단가 확인과 발전량 통계 수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제3자간 전력거래계약

감사합니다